

2012. 9. 10 Vol. 37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추석 대비 농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
벼 백수피해 최소화 대책 적극 추진

거시경제 동향

2012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기획 정보

2011 ~ 2015년 농림·수산물 분야 중기재정 소요 분석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농어업인 복지 지원 현황(2011년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 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추석 대비 농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

※ 본 자료는 9월 4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태풍 피해 및 추석 대비 농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15개 성수품 공급확대

- (계획) 특별대책기간중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대비 1.5배 확대
- (방법) 정부·농수협 재고 및 품목단체 보유량 집중 방출
 - 과일 : 농협 계약출하 물량 출하 확대
 - * 추석용 계약출하 물량 확보 : 24천 톤(사과 10천 톤, 배 14천 톤)
 - 채소 : aT비축 및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출하
 - * 배추 재고량 : 43.8천 톤(aT 1.4천 톤, 농협계약재배 42천 톤)
 - 축산물 : 농협 도축 물량(5.4천 톤), 축산단체 보유 물량을 확대공급
 - * 한국계육협회 : 닭 12천수 / 한국양계농협 : 달걀 1,620만개 공급
 - 임산물 : 산림조합을 통해 밤·대추 계통출하 확대

□ 직거래 및 특판장 운영

- (운영계획) 특별대책 기간중 2,543개소 개설·운영
- (운영방식) 기존 직거래장터 및 농·수협 매장에 성수품 특판코너를 설치하여 시중가 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
 - 바로마켓 등 : 과천·부산경마장, 4대강 등에서 특판 실시
 - 지자체 : 상설 직거래 장터에 추석 성수품 판매확대
 - 농·수협 : 하나로마트·바다마트 등 판매장과 시군지부·지점 등에 성수품 판매장 임시개장 및 할인판매
 - 이동판매 : 농협 이동판매 차량(73대) 이용, 축산물 순회판매

□ 농·수업을 통한 선물세트 공급

- (과일) **제수용 선물세트(3종)를 제작하여 할인(10%) 판매(농협)**
 - 공급물량 : ('11년) 3만세트 → ('12) 5만세트(167%)
 - * 종합세트(1만세트) : 사과(5개) + 배(3) + 단감(5) + 밤(300g) + 대추(300g)
- (축산물) **소값 안정**을 위해 한우 선물세트 **특판물량 확대**
 - 특판물량(10종류) : ('11년) 10만세트 → ('12) 20만세트(200%)
 - * 판매처 : 농협중앙회, 한우자조금협회, 한우협회 동시 판매(35% 할인)
- (수산물) **10종의 종합세트** 등을 **수협 계통매장**에서 판매(9.10~9.28)
 - 공급물량 : ('11년) 10만세트 → ('12) 11만세트(110%)
 - * 제수용 수산물 세트, 생선 건어세트 등을 10~30% 할인판매

□ 비축물량 및 할인판매

- 추석전까지 **대형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을 통해 할인공급**
 - 배추 : 대형유통업체 등을 통해 30% 할인판매(aT, 9.3~9.25, 2,400원 수준)
 - * 추진물량 : 300톤 내외(대형마트 우선추진, 전통시장은 협의후 시행추진)
 - **수산물 : 전통시장** 등을 통해 **50% 수준 할인판매**(수협, 9.17~28)
 - * 추진물량 : 3,358톤(명태 1,351 고등어 946, 오징어 661, 조기 250, 갈치 150)

□ 농수산물 원산지 및 위생 감시 등 강화

- (**부정유통 방지**) 원산지 및 위생기준 준수여부 감시 강화
 -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명예감시원을 활용, 성수품 원산지 단속
- **축산물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위생감시 강화**
 - 검역검사본부·지자체 및 명예감시원(1.6천명) 합동단속

주요 농정 이슈_2

벼 백수피해 최소화 대책 적극 추진

※ 본 자료는 9월 3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식품부, 벼 백수피해 최소화 대책 적극 추진」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9월 3일 기준, **태풍 블라벤, 덴빈으로 인한 벼 백수피해 집계면적**
 - **총 85천 ha**(전북 28, 전남 50, 충남 6, 경남 1 등)
- 이에 피해 최소화대책 추진과 함께 피해농가 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

□ 주요 대책

- 백수피해 포장에 생육촉진제(영양제) 살포시 피해 확산이 방지 된다는 농가의 일부 사례가 있어 피해가 심하지 않는 논에 대해서는 **병충해 방제와 생육촉진제 살포 등을 통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농가 지도**를 확대
- **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히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백수피해 벼의 수량 및 품질 변이에 대한 **긴급 연구과제도 추진**
 - 백수피해 최소화 T/F팀은 농식품부, 농진청과 피해가 심한 3개 도기술원(충남, 전북, 전남)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
 - **백수피해 벼 생육상황의 주기적인 조사**와 함께 **수량감수 최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
 - 이와 함께, 피해농가 필지를 대상으로 백수피해 벼의 수량 및 품질변이에 관한 **긴급 연구 과제를 수행**해 **T/F팀의 피해최소화 대책의 기술적인 부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 **백수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방안도 강구**해 피해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

- 우선,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해 **재해 대책법상의 보조 및 용자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
- 지원 내용
 - ※ 직접지원 : 대파대(220만 원/ha), 농약대(10만 원/ha)
 - ※ 간접지원 : 생계지원비(80만 원/농가), 학자금면제(읍지역 53만 원), 영농 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 이와는 별도로 피해 벼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벼 매입 등급에 “잠정등외” 규격을 신설**하여 **피해곡을 별도 매입**
- **잠정등외 규격도 「잠정등외 A, B」 두 단계로 신설**하여 피해농가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 ※ 현 공공비축벼 수매 등급 : 4등급 【특등(제현율 82%이상), 1등(제현율 80%이상), 2등(제현율 76%이상), 3등(제현율 69.5%이상)】
- **수확이 불가능한 벼**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와 연계해 조사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피해 벼를 **조사료로 활용 시**에는 **사일리지 제조비를 ha당 4만 원 지원**
- 피해농가가 조기에 생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 경영희생자금도 지원**할 계획

거시경제 동향

2012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 본 자료는 9월 3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2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전반적 동향

- '12.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1.2%(전월비 0.4%) 상승하여 지난달에 이어 1%대 안정세 지속('00.5월 1.1%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소비자물가 동향>

구분	'11.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전년 동월비	4.7	3.8	3.6	4.2	4.2	3.4	3.1	2.6	2.5	2.5	2.2	1.5	1.2
· 전월비	0.7	△0.1	△0.2	0.1	0.4	0.5	0.4	△0.1	0.0	0.2	△0.1	△0.2	0.4

- 구입빈도와 지출이 높아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0.6%(전월비 0.7%)로 안정세

※ 생활물가(전년 동월비, %): ('12.2)3.1 (3)2.0 (4)2.0 (5)2.2 (6)1.8 (7)0.8 (8)0.6

- 다만, 신선식품물가는 채소·과실 등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전월 대비 상승(4.6%)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2.9%)로는 하락

※ 신선식품(전년 동월비, %): ('12.2)0.4 (3)4.7 (4)6.9 (5)13.9 (6)11.0 (7)3.0 (8)△2.9

- 농산물·석유류 제외 근원물가는 1.3%(전월비 0.2%) 상승하였고,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OECD 방식)는 1.2%(0.2%) 상승

※ 근원물가(전년동월비, %): ('12.2)2.5 (3)1.9 (4)1.8 (5)1.6 (6)1.5 (7)1.2 (8)1.3

※ OECD방식: 2.6 1.7 1.6 1.5 1.4 1.2 1.2

□ 부문별 동향

- (농축수산물) 축산물(전월비 △2.2%)은 하락하였으나 농산물(4.4%) 가격 상승으로 전월대비 1.8% 상승

- 농산물은 시금치(전월비 64.2%), 수박(55.4%), 배추(15.7%) 등 채소·과실류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고구마(△16.4%), 가지(△18.3%), 복숭

아(△6.3%) 등 일부 품목은 하락

- 축산물: 닭고기(전월비 0.8%) 등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돼지고기(△5.9%) 등을 중심으로 하락

○ (공업제품) 석유류(전월비 1.8%), 가공식품(0.4%)은 상승하였으나, 내구재(△0.1%), 의약품(0.1%) 등의 안정세로 전월대비 0.5% 상승

- 석유제품은 LPG(자동차용, 전월비 △4.1%)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국내 휘발유(3.1%), 경유(2.8%) 가격은 상승

○ (전기수도가스·공공서비스) 전기요금 인상(8.6일) 등의 영향으로 전기수도가스비는 소폭 상승, 보육시설이용료(전월비 0.0%, 전년동월비 △34.0%) 등 공공서비스는 안정세

○ (개인서비스) 외식비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원비 등 외식제외 개인서비스 요금이 다소 높게 상승

참고: 주요 등락품목

단위: %(전월비)

구분	상승품목	하락품목
농축수산물	양상추(90.0), 수박(55.4), 시금치(64.2), 오이(33.8) 포도(14.4) 배추(15.7)	돼지고기(△5.9), 고등어(△3.8), 가지(△18.3), 고구마(△16.4), 피망(△9.8), 복숭아(△6.3)
공업제품	휘발유(3.1) 경유(2.8) 부침가루(13.2) 세탁세제(4.3)	LPG(자동차용 △4.1, 취사용 △3.6) 믹서(△21.4) 냉장고(△3.9) 종이거저귀(△2.7)
전기수도가스	전기료(2.1)	도시가스(△0.1)
서비스	학원비(고등학생 2.4) 전세(0.3) 미용료(1.0) 공동주택관리비(0.9) 맥주(외식 0.7)	단체여행비(해외 △1.8, 국내 △1.3) 레포츠이용료(△1.5) 놀이시설이용료(△1.5) 국제항공료(△0.8)

기획 정보

2011~2015년 농림수산물 분야 중기재정 소요 분석

※ 본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1~2015년 농림·수산물 분야 중기재정 소요분석」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분석 대상 및 범위

- (분석 범위) 정부의 지출 중 「2012년도 예산 작성지침」에 따라 농림·수산물 분야로 분류하고 있는 사업비를 주요 대상으로 함.
- (분석 대상) 농림·수산물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 부문 및 부처의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을 대상으로 함.

□ 농림·수산물 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1~2015년 농림·수산물 분야 재정소요규모를 90조 6,020억 원으로 계획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2015년 중 농림·수산물 분야 중기재정 소요를 세부사업 단위에서 추계한 결과 기간 재정소요액은 90조 4,848억 원~92조 1,200억 원으로 나타남¹⁾.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의 차액 : △1,170억 원~1조 5,180억 원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단위: 조 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회예산정책처	17.6	18.0	18.2(18.5)	18.3(18.9)	18.3(19.0)
국가재정운용계획	17.6	18.1	18.3	18.3	18.4

주: ()는 2013년 이후 신규 사업 추가 시나리오를 반영한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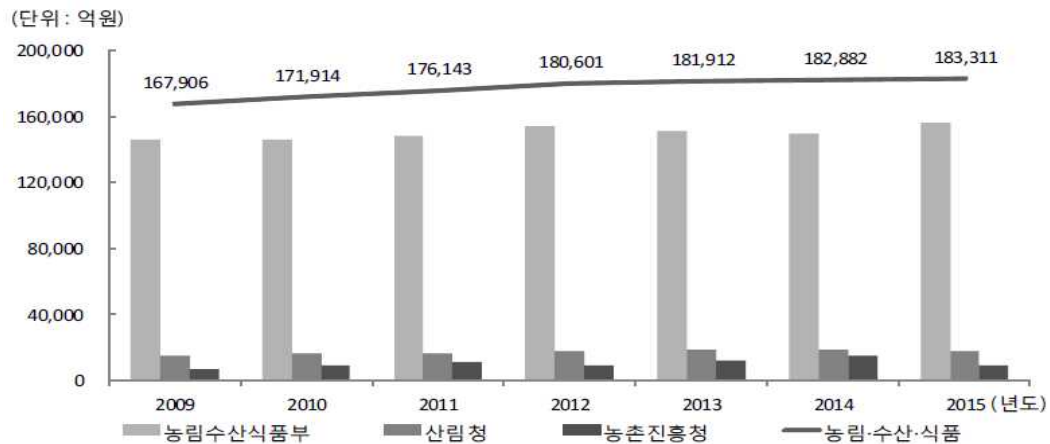
1) NABO 추정치는 부처별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수록된 세부사업별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하여 추산한 것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투자계획은 「2012~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에 근거한 것임.

□ 농림·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처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 농림수산식품부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 75조 9,293억 원
- 산림청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 8조 9,858억 원
- 농촌진흥청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 5조 5,696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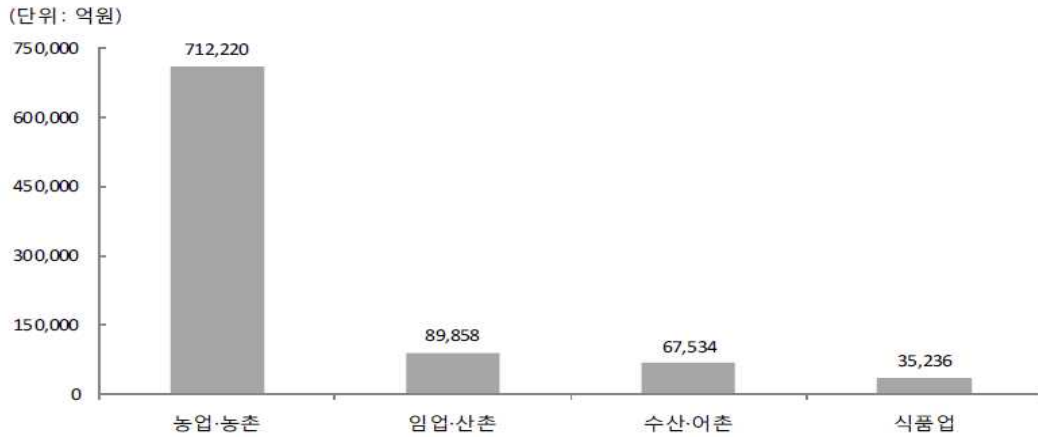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처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 농업·농촌 부문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 71조 2,220억 원
- 임업·산촌 부문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 8조 9,858억 원
- 수산·어촌 부문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 6조 7,534억 원
- 식품업 부문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 3조 5,236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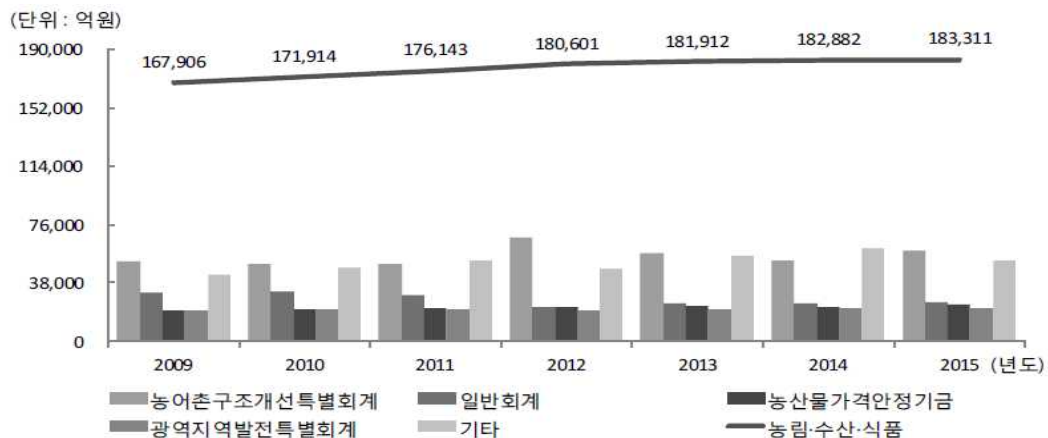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회계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 일반회계 중기재정 소요 규모(2011~2015) : 12조 7,584억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중기재정 소요 규모(2011~2015) : 28조 8,157억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기재정 소요 규모(2011~2015) : 10조 5,564억 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중기재정 소요 규모(2011~2015) : 8조 1,084억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중기재정 소요 규모(2011~2015) : 11조 4,381억 원
- 농지관리기금 중기재정 소요 규모(2011~2015) : 5조 1,010억 원

<농림·수산·식품 분야 회계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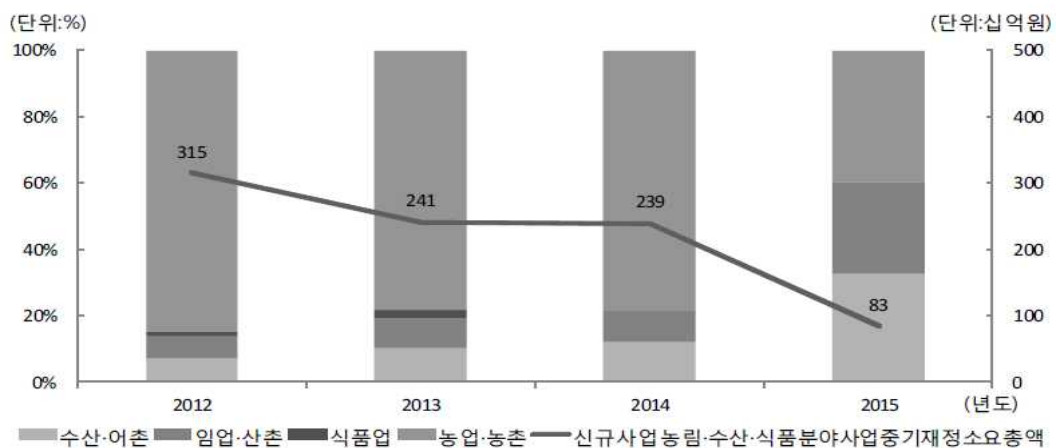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 분야 신규 및 계속 사업 규모

○ 농림·수산·식품 분야 신규 사업 규모

- 농림·수산·식품 분야 신규 사업(2012~2015년) 중기재정소요 규모는 총 8,781억 원으로 동 기간 계속 및 신규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90조 4,848억 원의 1% 차지
- 농업·농촌 부문 신규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2012~2015) : 6,776억 원
- 수산·어촌 부문 신규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2012~2015) : 1,009억 원
- 임업·산촌 부문 신규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2012~2015) : 895억 원
- 식품업 부문 신규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2012~2015) : 101억 원
- 한편, 2012년 예산에 나타난 신규 농림·수산·식품 분야 사업 중기재정소요의 부처별 비중은 농림수산식품부 93.20%, 산림청 6.76%, 농촌진흥청 0.03%로 나타냄.

<농림·수산·식품 분야 신규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 농림·수산·식품 분야 계속 사업 규모

- 농림·수산·식품 분야 계속 사업 중기재정소요액은 총 88조 4,602억 원으로 동 기간 신규 계속, 완료 사업 여부가 확인된 농림·수산·식

품 분야 사업 중기재정소요액 90조 4,848억 원의 97.8%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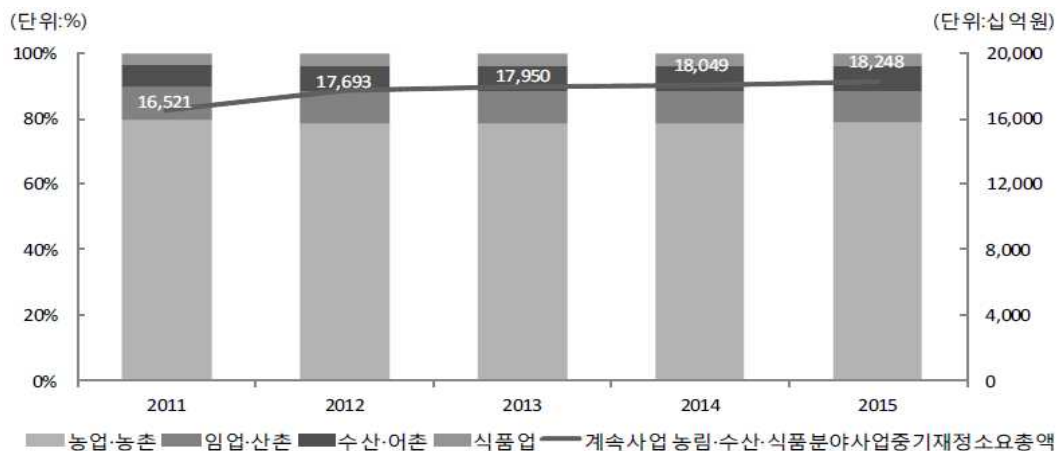
· 농업·농촌 부문 계속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2012~2015) : 69조 6,549억 원

· 임업·산촌 부문 계속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2012~2015) : 8조 8,765억 원

· 수산·어촌 부문 계속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2012~2015) : 6조 4,415억 원

- 한편, 계속 사업의 중기재정소요는 농림수산식품부 74조 442억 원, 산림청 8조 8,765억 원, 농촌진흥청 5조 5,395억 원으로 나타남.

<농림·수산·식품 분야 계속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지원방식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 보조방식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 44조 1,465억 원

○ 직접 사업의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 27조 5,588억 원

○ 융자방식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 16조 972억 원

○ 출연방식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 1조 1,626억 원

○ 출자방식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 4,130억 원

□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규모

○ 2012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규모 총합: 23조 1,905억 원 전망

- 2012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지출 규모: 18조 601억 원

- 농업·농촌 부문 재정지출 규모 : 14조 2,226억 원
- 임업·산촌 부문 재정지출 규모 : 1조 7,951억 원
- 수산·어촌 부문 재정지출 규모 : 1조 3,543억 원
- 식품업 부문 재정지출 규모 : 6,881억 원

- 2012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조세지출 규모: 5조 1,30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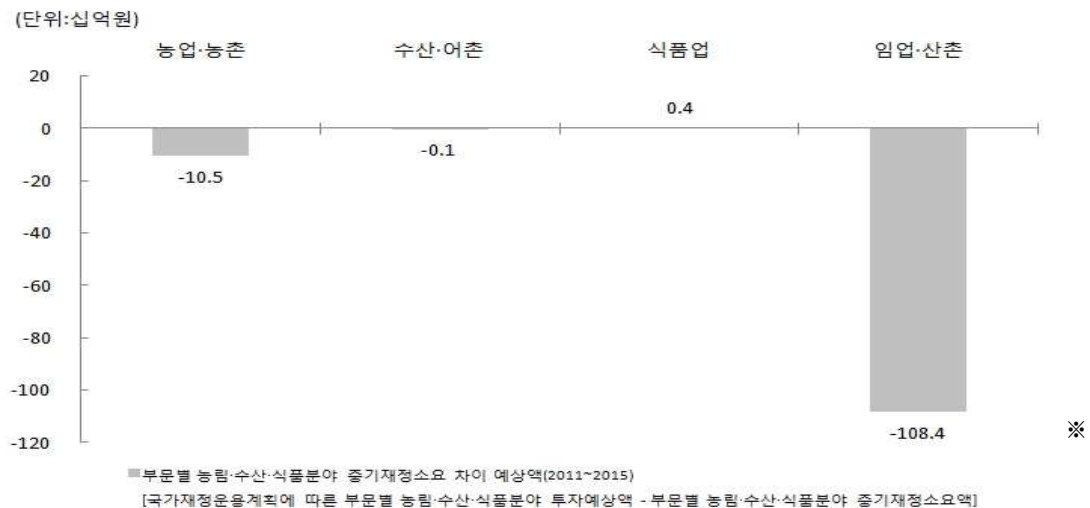
- 농업·농촌 부문 조세지출 규모 : 4조 9,932억 원
- 임업·산촌 부문 조세지출 규모 : 5억 원
- 수산·어촌 부문 조세지출 규모 : 1,367억 원

□ 농림·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의 문제점

○ 개별 사업의 중기재정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투자계획

- 이는 부처별 개별사업 추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투자계획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거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개별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개별 사업의 부문별 중기재정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예상액(2011~2015)>



주. 농업·농촌 부문 △105억 원, 수산·어촌 부문 △1억 원, 식품업 부문 4억 원, 임업·산촌 부문 △1,084억 원

□ 농림·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관리의 개선방안

○ 재정관리에 있어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필요

- 2012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관련 조세지출은 5조 1,305억 원으로 이는 동 분야의 재정지출 18조 601억 원을 포함한 전체 지출 23조 1,905억 원의 22.1%에 해당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투자계획은 5년 단위(2011~2015)이고, 조세지출의 관리기간은 3년 단위(2010~2012)인데 이를 5년 단위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1년도 결산 심의에 있어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통합·연계 분석을 통하여 각 사업별로 성과가 낮은 사업의 경우 2013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조세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 등의 정책 효과가 미흡한 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개별사업의 성과관리 반영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배분의 일관성·효율성·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단위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예산 불용 및 이월액에 따라 차년도와 차차년도의 예산규모를 조정함으로써 개별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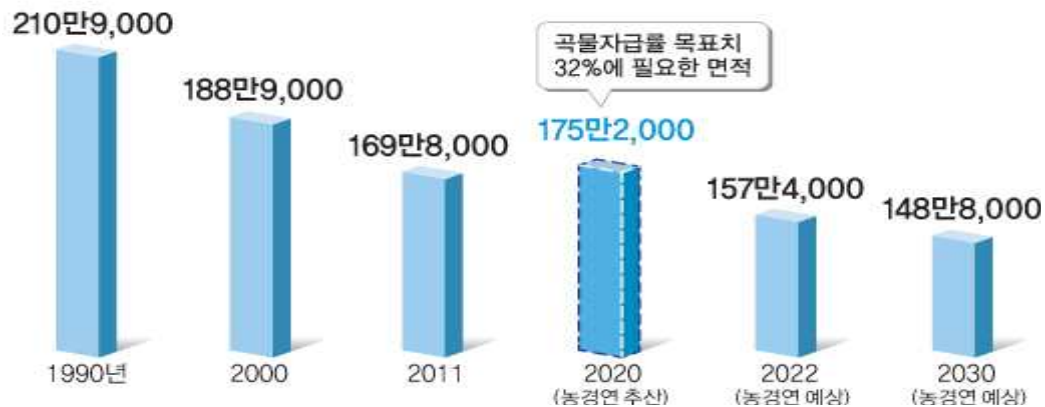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9월 3일~9월 7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농지감소 심상찮다

농지면적 변화 추이 단위:ha



-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은 7,018ha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452ha에 전취 8.8% 증가**하였으며, 이중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1,428ha(20%), 진흥지역 밖에서 5,590ha(80%)가 전용된 것으로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택지개발과 공업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농지전용과 관련한 규제 장치가 속속 해제되는 추세에 맞춰 향후 전용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를 표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1년 말 기준 169만 8,000ha인 농지면적이 2022년에는 157만 4,000ha, 2030년에는 148만 8,000ha로 감소. 농경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간척과 개간을 통해 농지면적 감소분을 상당 부분 상쇄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농지조성이 거의 진행되지 않아 **농지의 순감소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0년까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최소 농지 175만 2,000ha를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우려함.

자료 : 농민신문(2012.9.5).

□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전남 해남·장흥·강진·영광·신안군

- 정부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 피해가 심각한 전남 5개 군 해남군·장흥군·강진군·영광군·신안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전라남도의 고흥군 이하 9개 시군, 전라북도의 남원시 이하 4개 시군, 광주광역시 남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특히 해남군·장흥군·강진군·영광군·신안군 등 5개 군의 집계된 피해액은 **해남군이 341억 원, 장흥군 255억 원, 강진군 132억 원, 영광군 112억 원, 신안군 100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됨.**

자료 : 농민신문(2012.9.3~7).

□ 소점/쌀 통계 무엇이 문제인가

- 2011년 수확기 쌀값이 80kg에 16만 6,308원으로 2010년 13만 8,231원보다 2만 8,000원 정도 최근 5개년 중 가장 높은 수준. 하지만 많은 농가들이 벼 출하를 늦췄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그 이유를 **‘부정확한 쌀 생산 통계에 대한 시장의 불신’** 때문이라고 설명. 2010년 쌀 생산량 통계가 수확기 실제 수급상황보다 과다 추정돼 농가들이 저가로 벼를 판매했다는 인식이 확산돼 보상심리가 작용하면서 2011년 수확기에 벼 출하 기피로 이어졌다 것. 이 같은 **통계청의 쌀 생산량 통계가 시장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데 이어 이번 **쌀 재배면적 통계에 대한 신뢰마저 악화**된다면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객관적인 검증을 통한 신뢰회복이 필요한 시점**에서 통계청은 기존의 전문조사관을 통한 표본 필지별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농업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위성 영상을 활용한 원격탐사기술을 도입**하는 방안 등의 중장기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벼 재배면적 조사의 경우 원격탐사기술을 이용한 전국 시범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그 중요성을 감안해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5년부터 실용화할 계획에 있음.

쌀 생산량 조사는 기술적인 여건을 감안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 통계청은 “현장 실측조사는 2만 6,000개 표본조사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원격탐사기술을 적용한 조사는 4만 2,000개 표본조사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통계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

자료 : 농민신문(2012.9.5).

□ 연실과 너무 다른 가축통계 믿어야 하나

-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가축사육마리수가 실제 사육마리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한우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마리수보다 이력제를 통한 마리수가 30만 마리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마리수에 맞춰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이 우려 되고 있으며, 돼지도 FMD 백신 접종 시의 마리 수가 통계청이 발표한 마리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적어도 소와 돼지의 마리수 만큼은 통계청 조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력제에 의한 마리수를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자료 : 축산신문(2012.9.5).

□ 중국 포장식품 영양성분 표기규정 실시

- 중국이 포장식품영양 라벨통칙을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에 따라 **2013년부터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식품의 포장 라벨에는 중국 정부에서 지정하는 양식의 영양성분표를 반드시 삽입**해야 하며, 영양성분표의 표기사항은 크게 ‘1+4의 강제표기 사항’과 ‘선택적 표기사항’으로 복잡하지 않으나 이를 누락할 경우 판매가 불가능. ‘강제표기 사항 1+4’는 식품의 열량과 식품의 4대 핵심 영양성분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을 의미하며, 비타민, 섬유질, 칼슘 등 기타 성분은 ‘선택적 표기사항’에 해당.

자료 : 원예산업신문(2012.9.3).

연구 지원 정보

농어업인 복지 지원 현황(2011년 현재)

※ 본 자료는 e-나라지표(www.index.go.kr)에서 제공하는 「농어업인 복지 지원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지표 설명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1인당 연간 평균지원액

- 농어업인 1인이 연간 경감 및 지원받은 건강보험료 액수를 나타내며, 증가할수록 경감지원혜택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건강보험료 1인당 연간 평균지원액 : 총 경감지원액/총 지원대상자수

○ 국민연금보험료 1인당 연간 최대지원액

- 농어업인 1인이 연간 지원받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할수록 지원혜택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1인당 연간 최대지원액은 정률지원이 허용되는 기준소득월액('12년 79만 원)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받은 경감액의 1년치 합계

○ 농업인안전공제 1인당 공제료(농협 안전공제 총 공제금/가입자 수)

- 매년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보상수준이 확대될수록 금액이 증가함.

□ 농어업인 복지 지원 증감 추이

○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 대해 농어촌 거주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율 22% 이외에 추가로 경감지원 확대

※ 추가 경감지원율 : ('04) 8% → ('05) 18% → ('06 이후) 28%

- '06년 이후 국민건강보험료 증감지원율을 50%(22+28)로 확대함에 따라, 1인당 연간 평균지원액은 '02년 9만 4천 원에서 '11년 72만 8천 원으로 증가

○ 농어업인의 노령,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및 중단 시 생활 보장**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지속 확대**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은 '02년 1인당 연간 최대 4만 8천 원에서 '11년 최대 42만 7천 원으로 증가

<농어업인 복지지원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어업인건강보험료 경감 지원률	22	22	30	40	50	50	50	50	50	50
- 1인당 연간 평균지원액	94	102	210	293	459	508	575	608	667	728
국민연금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	48	86	152	224	259	281	335	427	427	427
농업인안전공제가입률	32	38	37	40	37	45	46	50	52	54
- 1인당 공제료	21	21	29	30	49	54	66	78	78	85

주 1: '99년~'03년 건강보험료 1인당 연간 지원액은 농어촌 주민 지원액 기준임

- 경감지원률 : 농식품부 지원 28% + 보건복지부 농어촌 경감 22%

- 평균 지원액 : 농식품부 총 지원액 / 월 평균 지원인원 <- 농식품부 28% 지원시 금액

- 50% 지원시 금액 : 평균지원액 / 28 × 50 (우리부 지원 + 복지부 경감)

2: 국민연금 1인당 연간 최대지원액은 연도별 연간으로 환산한 최대 지원금액 기준임

3: 농업인안전공제가입률은 농림업취업자 대비 농협의 안전공제에 가입한 농업인

자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백서, 농협 안전공제통계,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원현황

□ 양우 계획

○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은 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소득금액 상향할 계획**

- 기준소득금액 : ('07) 520천 원→('08) 620→('09) 730→('10~'12) 790→('13) 850

○ **농업인 안전공제**는 '04년부터 **보장수준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가입률을 제고**할 계획

- 사망시보장수준 : ('04)1,000만 원→('06)2,500→('07)3,500→('08)4,500→('09)6,000→('13계획)9,000
- 보장수준 확대에 따라 1인당 공제료가 '97년 2만 1,300원에서 '09년 7만 8천 원으로 증가

<참고> 국가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대만

- 보험료 : 소득 및 피부양자수에 비례하여 부과
 - 보험료 분담 : 사용자, 피용자, 정부의 3자간에 분담
 - 국고지원 :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을 원칙
 - 각 가입집단의 유형에 따른 보험료부과체계에 상응하여 정부가 일부 정률 혹은 전체 정률로 보험료를 분담
-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분담비율 : 피보험인(30%), 국가(60~40%), 지자체(10~30%)

□ 일본

- 건강보험운영방식 : 조합방식
 - 건강보험재원 : 보험료, 국고부담, 도도부현 부담(광역부담), 시정촌부, 기타수입
 - 국고지원
 - 시정촌 국민건강보험 : 급여비의 50% 및 보험료 경감분 보조
 - 국민건강보험조합 : 급여비의 32%와 추가적으로 15%를 한도로 보조
 - 국고보조가 정률로 되어있어 의료비가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국고보조가 증가되는 구조
- ※ 자료출처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한국 농촌경제연구원, '06.9)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